

수원고등법원 2024. 7. 5 선고 2024나107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4. 7. 5 선고 2024나10736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3. 12. 13 선고 2021가합2532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준동

피고, 항소인1. A

2. B

변론 종결2024. 5. 31.

판결 선고2024. 7. 5.

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3. 12. 13. 선고 2021가합25321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C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3. 25. 체결된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
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4면 아래에서 2행 "그 밖에도"부터 아래에서 1행 "보유하고"까지를 "53,166,593원 상당의 차량,
69,000,000원 상당의 기계장치 합계 2,476,609,233원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"로 고친다.
- 6면 아래에서 2행부터 7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나) 피고들은 C의 적극재산에 ① 차량 가액 합계 106,333,186원(= 차량운반구 53,166,593원 +
지게차 6,513,334원 + 1톤 차량 판매대금 1,196,592원 + 집게차 41,960,000원 + 화물차
3,496,667원), ② 기계장치 가액 합계 69,000,000원(= 압출기 63,000,000원 + 파쇄기
6,000,000원), ③ 외상매출금, 미수금, 선금금 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
판단하여야 하고,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
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그 재산이 채권인
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

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, ①을 제8,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이 차량과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②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. 3. 25. 이후에 C이 압출기와 파쇄기를 취득하였고,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성립하였다거나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지 않으므로,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재산은 C의 적극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.』

○ 7면 6행의 "증거" 다음에 ",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"를 추가하고, 7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(화성세무서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2020. 3. 25. 기준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금을 기준으로 하였다).

1	D유한회사	1,291,620,000
2	화성세무서(2020. 3. 25. 기준)	78,718,170
3	불상의 신청채권자	382,500,000
4	주식회사 E	13,930,006
5	피고 A1)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있던 피고 A의 채권만 포함시켰다.	100,000,000
6	F주식회사	292,832,400
7	신용보증기금	4,429,524
8	중소기업은행	71,155,569
9	중소기업은행(원고 보증)	200,000,000
합계	2,435,185,669	

○ 8면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2,354,442,640원이고, 소극재산은 2,435,185,669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,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』

○ 11면 아래에서 1행의 "시가"부터 12면 1행의 "허가증"까지를 "차량 및 기계장치 등"으로 고친다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임상기

판사장지용

판사류희상

별지

1)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있던 피고 A의 채권만 포함시켰다.